

**한국서부발전 후원 세이브더칠드런**  
**「코로나19 아동식사지원사업」**  
**‘같이가치 먹쥬’**  
**협력기관 공모 안내서**

2022. 9.

**세이브더칠드런**

---

## 목 차

---

### 1.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 2. 코로나19 아동식사지원사업 소개

- 1) 사업배경
- 2) 사업개요

### 3. 선정기준

- 1) 필수조건
- 2) 심사기준
- 3) 심사방법
- 4) 심사결과 발표

### 4.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 3) 접수방법

### 5. 일정 및 선정 절차

## 1.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해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각지에서 빈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한국에서의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의 아동권리 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 육 및 발달 지원사업과 국제개발사업, 인도적 지원(긴급구호)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2. 코로나19 아동식사지원사업 소개

### 1) 사업배경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제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은 2020년 51만 6,639명으로 2019년 대비 1만 9,762명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을 지원받은 아동 수’는 2020년 30만 8,440명으로 2019년 대비 2만 1,574명 감소하였음.
-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자체 가운데 약 68%에 달하는 154곳이 정부의 급식 권장 단가 6,000원(2021년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들은 주로 집 앞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구입함.
- 또한, 지자체 별 아동 급식 지원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아동 급식 지원율 인천 41.1%, 경남 79.7%) 취약계층 아동은 거주지에 따라 결식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사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결식위기아동을 발굴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 개별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식사조차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2) 사업개요

#### ① 사업 대상(충남지역)

- 코로나19로 인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  
(장애부모가정,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결식위기 저소득가정)
- 법정저소득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저소득 가정: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아래표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표>

(단위: 천원)

가구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 80%	2,608,000	3,356,000	4,097,000	4,820,000	5,526,000	6,224,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91,563	118,045	144,572	169,210	193,882	219,871
	지역	54,782	109,394	140,095	172,486	205,006	238,263
	혼합	92,499	119,032	146,207	171,393	196,955	223,722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868,55원씩 증가 (8인가구 8,365,793원)
-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수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② 지원 기간

- 2022년 9월 ~ 12월 (4개월)

#### ③ 주요 사업내용

구분	내용	시기
대상아동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대상 공모 통해 <u>수행기관 10개소 선정</u></li> <li>- 사업수행 적극성 여부, 사업목적 이해정도, 실무자 경력 등 '자체 심사지원표' 근거로 사업수행기관 선정</li> </ul> </li> <li>■ 지원아동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기관 <u>1개소 당 최대 15가정 발굴</u></li> </ul> </li> </ul>	2022. 9.
식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2회 지정된 요일에 개별 가정으로 지원</li> <li>- 참여기관 및 참여아동의 상황에 따라 주 2회 이상 지원도 가능</li> </ul> </li> <li>■ 식사키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 기준 총 5식 분량의 식사 키트 지원</li> <li>- 조리완제품 1회: 저염식, 건강식 위주 반찬으로 3식 가능한 분량 구성</li> <li>- 밀키트 1회: 아동이나 보호자가 쉽게 조리할 수 있게 전처리 완료된 2식 분량의 밀키트 구성</li> </ul> </li> </ul> <p>※ 조리완제품과 밀키트 제공 시의 분량은 5식 내에서 조정 가능</p>	2022. 9.~ 12.

	(Ex. 조리완제품 2회, 밀키트 3회) ■ 식단 구성 - 기관 내 영양사 및 외부의 검증된 식단표를 통해 구성 ■ 조리 및 배달 - 기관 내 조리 및 배달 가능 - 외부업체를 통한 조리 및 배달 가능	
사례관리	■ 기관 내 사례관리 대상으로 등록 ■ 가정 내 식사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상황 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방문 불가할 경우, 유선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적극적 소통 ■ [서식1] 아동안전보호점검표 활용하여 아동 안전 상황 수시 체크 ■ 지원종료 이후에도 개별 가정에서 아동의 식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노력	2022. 9~12.
사업모니터링	■ 유선 모니터링 - 시기: 격월 1회 - 대상: 전체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가정 - 수행: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 주요내용: 전반적인 사업 운영현황 점검, 실무자 및 참여자 의견 청취 ■ 현장방문 모니터링 - 시기: 2022년 11월~12월 - 대상: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가정 일부(전체 지원가정의 약 5%) - 수행: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 주요내용: 전반적인 사업 운영현황 점검, 실무자 및 참여자 의견 청취	2022. 9~12.

④ 지원금액 (신청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관당 15가정 이내 신청 가능
- 기관당 최대 10,440,000원 지원 가능(초과 시 담당자와 논의 필요)

구분	산출내역	지원금액
식사지원	- 1가정 당 696,000원 산정 기준 * 1가정 당 산정 방법 √ 1식당 8,700원, 주 5식 지원 기준 => 1주당 43,500원 √ 1주당 43,500원x4주x4개월=>696,000원 ※단, 아래와 같은 가정에 한해 1가정에 2세트(1,392,000원) 지원 가능 - 사례 1: 가족구성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3인 이상일 경우	최대 10,440,000원

	- 사례 2: 가족구성원 중 중학생 이상 아동이 2인 이상일 경우	
--	--------------------------------------	--

### 3. 선정기준

#### 1) 필수조건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참고자료 참조)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 공모 신청 시,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 전체를 확보해 선정 즉시 지원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지원 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기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관 및 아동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 2) 심사기준

-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해 협력 여부와 사업비를 결정함
- **실무자 역량:**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업목적 이해, 사업관리 계획,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능력 등
- **사업운영 경험:** 신청기관의 유사 사업 운영 경험, 사업운영 방법의 전문성, 업체 활용방안 등
-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발굴 및 대상의 적절성:** 주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 발굴, 대표사례 1사례 제출
- **사례관리 능력:** 기관의 아동 사례관리 전문성

####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무자 전화 인터뷰(필요 시)

#### 4) 심사 결과 발표

- 선정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에 사업참여동의서 제출

###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9월 2일(금) ~ 2022년 9월 18일(일)

2)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제출 서류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사업신청 공문 2. [붙임2] 사업신청서(기관용)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3. [붙임3] 지원아동 명단 1부 (익명처리, 최소한의 정보 제공)</li><li>4. [붙임4] 지원신청서(가구용) 1부</li><li>5. [붙임5] 상기 [붙임4]에 따른 지원신청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li><li>6.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ul>
--	---

3) 접수방법: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대전아동권리센터 이주현 사원  
(E-mail: [juhyun.lee2@sc.or.kr](mailto:juhyun.lee2@sc.or.kr) / Tel: 042-826-0161)

/끝/